

의안번호	제 908 호
의결 연월일	. . . (제 회)

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	원감희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1년 11월 10일

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원감희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08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1년 11월 10일

발 의 자 : 원감희, 연종석, 송미애
윤남진, 이상정, 이상식
이옥규

1. 제안이유

-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, 시험 등의 신청기간 제한 규정을 삭제함
- 물가 변동 등에 따른 시험·분석 수수료를 현실화함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미비한 조문을 수정·보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시험 등의 의뢰 신청기간을 수시로 변경함(안 제4조)
- 수수료 및 시험에 필요한 경비는 농촌진흥청 고시를 준용하도록 규정함(안 제11조제4항)
- 수수료 및 경비의 납부방법을 다양화 함(안 제11조제5항)
-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미비한 조문을 수정·보완함

3. 조례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붙임
- 조례안예고 : 조례안 예고 대상
- 관련부서 협의 : 농업기술원 친환경연구과와 협의함
- 비용추계 : 해당 없음

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관하여 필요한”을 “필요한”으로 한다.

제3조의 제목 “(시험등의 의뢰)”를 “(시험 등의 의뢰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시험등을”을 “시험 등을”로, “충청북도농업기술원의 장”을 “충청북도 농업기술원장”으로, “시험등에”를 “시험 등에”로,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날로부터”를 “날부터”로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분석 의뢰”를 “분석의뢰”로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등의”를 “제1항에 따른 시험 등의”로 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신청기간) 제3조에 따른 시험 등의 의뢰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.

제5조의 제목 “(시험등의 업무처리 절차)”를 “(시험 등의 업무처리 절차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외의 부분 중 “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등의”를 “제3조에 따른 시험 등의”로, “기술 원장”을 “기술원장”으로, “ [별표 1] ”을 [별표] “로, “시험등의”를 “시험 등의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시험등을”을 “시험 등을”로, “기구등을”을 “기구 등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“시험등이”를 “시험 등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결과 통지서를”을 “결과통지서에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각호의 1에”를 “각 호의 어느 하나에”로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기구등으로써”를 “기구 등으로”로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 제11조 제1항”을 “제11조제1항”으로, “시험등에”를 “시험 등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각호의”를 “각 호의”로, “시험등을”을 “시험 등을”로 한다.

제8조 본문 중 “시험등을”을 “시험 등을”로, “평가후”를 “평가 후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시험등에”를 “시험 등에”로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당해 시험등을”을 “해당 시험 등을”로,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등의”를 “제1항에 따라 시험 등의”로, “시험등을”을 “시험 등을”로 한다.

제10조의 제목 “(시험등의 결과표시)”를 “(시험 등의 결과표시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등의”를 “제9조에 따른 시험 등의”로, “포장등에”를 “포장 등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시험등의”를 “시험 등의”로 한다.

제11조의 제목 “(수수료 및 시험등 경비)”를 “(수수료 및 시험 등 경비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2항의 규정에 따라”를 “제2항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제3조 및 제9조에 따른 시험 등을 의뢰하거나 성적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외에 시험에 필요한 경비를 시험실시 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따로 납부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 및 시험에 필요한 경비는 「농촌진흥청 시험·분석 및 검정의뢰 규칙」 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와 시험경비를 적용하되, 시험 등의 목적이 「친환경농어업 육

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와 제34조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기 위한 경우에는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39조제1항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 및 시험에 필요한 경비는 충청북도 수입 증지, 현금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.

제12조 본문 중 “시험등을”을 “시험 등을”로 하고, “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1조제1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별표 2 및 별표 3을 삭제하고, 별표 1을 별표로 하여 이를 별지와 같이 한다.
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시험·분석 업무 처리절차 (제5조 관련)

구분	신청인	처리기관	처리기한
		농업기술원	
시험	신청서작성	접수 : 민원담당부서	접수 수 : 수시 수수료납부 : 의뢰 시
		시험계획검토 : 해당부서	
		시험계획서작성 : 해당부서	
		시험계획 심의 : 심의회	
	시험경비납부	시험실시통지 : 민원담당부서	통지: 시험실시 결정 후 즉시 시험경비납부: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
		시험실시 : 해당부서	시험수행 실제 소요 시간
		시험결과 평가 : 심의회	
성적서교부	시험성적서 작성 : 해당부서		
	시험결과 통지 : 해당부서	시험결과 평가후 10일 이내	
분석	신청서작성 및 수수료 납부	접수 : 민원담당부서	접수 수 : 수시 수수료납부 : 의뢰 시
		분석실시 : 해당부서	분석 실제 소요시간
		성적서 작성 : 해당부서	
	성적서 교부	결과통지 : 해당부서	분석 완료 후 5일 이내

<input type="checkbox"/> 시험 의뢰 신청서 <input type="checkbox"/> 분석		처 리 기 관 농업기술원
신 청 인	①성명(법인의 경우 에는 대표자 성명)	② 생년월일 (법인의경우사업자번호)
	③주 소 (법인소재지)	
④ 의뢰 내용	대 상 물 품 명	
	제 조 또는 생 산 년 월 일	
	대상물품의구체적인 내 용	
	시험·분석을 원하는 사항	
⑤목 적(용 도)		
<p>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·분석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 (분석)의뢰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0px;">년 월 일</p> <p style="margin-left: 100px;">신청인 (서명 또는 날인)</p> <p>충 청 북 도 농 업 기 술 원 장 귀 하</p>		
첨부서류 : 시험등의 의뢰시 자체 또는 예비시험 성적서 (국내외의 예비시험서 포함)등 참고자료를 제출하십시오.		수 수 료
		농촌진흥청 고시 참조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(뒷 쪽)

구분	신청인	처리기관 농업기술원	
		처리기관	처리기한
시험	신청서작성	접수 : 민원담당부서	접수 : 수시 수수료납부 : 의뢰시
		시험계획검토 : 해당부서	
		시험계획서작성 : 해당부서	
		시험계획심의 : 심의회	
	시험경비납부	시험실시통지 : 민원담당부서	통지:시험실시 결정후 즉시 시험경비납부:통지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
		시험실시 : 해당부서	시험수행 실제 소요 시간
		시험결과평가 : 심의회	
		시험성적서작성 : 해당부서	
	성적서교부	시험결과통지 : 해당부서	시험결과 평가후 10일 이내
	분석	신청서작성및 수수료납부	접수 : 민원담당부서
분석 실시 : 해당부서			분석 실제 소요시간
성적서작성 : 해당부서			
성적서 교부		결과통지 : 해당부서	분석이 끝난 후 5일 이내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농업기술원에 의뢰되는 농업에 관한 시험과 분석에 <u>관하여 필요한 사항</u>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<u>필요한</u>----- -----.</p>
<p>제3조(시험등의 의뢰) ① 농업에 관한 시험과 분석(이하 “시험 등”이라 한다)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“별지 제1호 서식”의 의뢰신청서와 <u>시험등을</u> 하고자 하는 대상물품을 <u>충청북도농업기술원의 장</u>(이하 “기술원장”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<u>시험등에</u> 필요한 대상물품의 제출시기는 다음 <u>각호</u>와 같다.</p> <p>1. 시험의뢰의 경우에는 의뢰자가 시험경비를 납부한 <u>날로부터</u> 20일 이내</p> <p>2. <u>분석 의뢰</u>의 경우에는 의뢰신청서를 제출할 때</p> <p>② <u>제1항의</u> 규정에 의한 시험등의 의뢰자는 자체시험성적서(국내외의 예비시험 성적을 포함 한다)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.</p>	<p>제3조(시험 등의 의뢰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 <u>시험 등을</u> ----- ----- <u>충청북도농업기술원장</u>----- ----- ----- <u>시험 등에</u> ----- -----<u>각 호</u>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<u>날부터</u> -----</p> <p>2. <u>분석의뢰</u>----- -----</p> <p>② <u>제1항에</u> 따른 시험 등의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4조(신청기간) ① <u>제3조의</u> 규정에 의한 <u>분석의 의뢰</u>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.</p>	<p>제4조(신청기간) <u>제3조에</u> 따른 시험 등의 의뢰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② <u>시험의 의뢰는 시험목적, 처리기간 및 작물배재시기 등을 감안하여 여름작물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, 겨울작물은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신청한다. 다만, 작물재배시기와 관계없는 시험의뢰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5조(시험등의 업무처리 절차)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등의 의뢰신청서를 받은 <u>기술원장은 [별표 1]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등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</u></p> <p>제6조(기계·기구의 제공 및 반환)</p> <p>① <u>기술원장은 충청북도농업기술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·기구만으로 의뢰받은 시험등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뢰자에게 기계·기구등을 제공하게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 및 기구를 제공받은 기술원장은 시험등이 끝난 즉시 기계·기구를 의뢰자에게 찾아가도록 통지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<u>의뢰자로부터 제공받은 기계·기구를 사용하여 시험 등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결과 통지서를 그 기계·기구의 명칭, 제조회사, 제원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5조(시험 등의 업무처리 절차) 제3조에 따른 시험 등의 ----- ----- 기술원장-- [별표] ----- -- 시험 등의 ----- -----.</p> <p>제6조(기계·기구의 제공 및 반환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시험 등을 ----- ----- ----- 기구 등을 ----- -----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----- -----시 험 등이 ----- -----.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결과통지서에 ----- 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기술원장은 <u>당해 시험등을 의뢰한 자에게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등의 성적증명서를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시험등을 의뢰한자의 동의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u></p> <p>제10조(시험등의 결과표시) ① 제8조 또는 <u>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등의 결과통지서 또는 성적증명서를 교부받은 자가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·포장등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의뢰 목적에 부합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결과통지서 또는 성적증명서의 전문을 표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<u>시험등의 결과표시를 할 때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여 표시하거나 「정부보증」 또는 「검사필」 등의 허위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.</u></p> <p>제11조(수수료 및 시험등 경비) ① <u>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등을 의뢰하거나 성적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[별표 2]의 시험의뢰 수수료는 충청북도 수입증지로, 분석의뢰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<u>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외에 [별표 3]의 시험에 필요한 경</u></p>	<p>-----.</p> <p>② ----- <u>해당 시험 등을</u> ----- ----- <u>제1항에 따라</u> <u>시험 등의</u> ----- -----<u>시</u> <u>험 등을</u> ----- -----.</p> <p>제10조 (<u>시험 등의 결과표시</u>) ① -- ----- <u>제9조에 따른</u> <u>시험 등의</u> ----- ----- <u>포장 등에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<u>시험 등의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11조(수수료 및 시험 등 경비) ① <u>제3조 및 제9조에 따른 시험 등을 의뢰하거나 성적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<u>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외에 시험에 필요한 경비를 시험실시 결정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<u>비를 시험 실시 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따로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기술원장은 시험이 실시되기 전에 그 시험 의뢰가 철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<u>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된 시험경비를 반환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④ <u>시험 등의 목적이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와 제34조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기 위한 경우의 수수료 등은 「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39조제1항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제12조(수수료의 면제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<u>시험등을</u> 의뢰하거나 농업인이 영농을 위하여 관할</p>	<p><u>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따로 납부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2항에 따라</u> ----- -----.</p> <p>④ <u>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 및 시험에 필요한 경비는 「농촌진흥청 시험·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」 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와 시험경비를 적용하되, 시험 등의 목적이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와 제34조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기 위한 경우에는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39조제1항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u></p> <p>⑤ <u>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 및 시험에 필요한 경비는 충청북도 수입증지, 현금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.</u></p> <p>제12조(수수료의 면제) ----- ----- <u>시험 등을</u> 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농업기술센터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<u>시험등을</u> 의뢰하는 경우에는 <u>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</u>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.</p>	<p>----- --- <u>시험 등을</u> ----- <u>제11조제1항에 따른</u> ----- -----.</p>

관련법령 발췌

□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

제29조(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)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현금·수입인지·수입증지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처리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□ 전자정부법

제14조(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)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세금, 수수료, 과태료, 과징금, 범칙금, 벌금, 과료 등을 현금, 수입인지, 수입증지,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,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□ 농촌진흥청 시험·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

제12조(수수료 등) ①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시험 등을 의뢰하거나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시험을 의뢰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외에 시험에 필요한 경비를 시험 실시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따로 납부하여야 한다.

③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시험이 실시되기 전에 그 시험 의뢰가 철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시험경비를 돌려주어야 한다.

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수료와 시험에 필요한 경비는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□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

제19조(유기식품등의 인증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등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기 위한 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과 유기식품 등의 생산, 제조·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
제34조(무농약농산물·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등)

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무농약농산물·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기 위한 무농약농산물·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대상과 무농약농산물·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생산, 제조·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
□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

제139조(수수료) ① 법 제113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.

1. 농산물의 경우: 별표 33
2. 수산물의 경우: 별표 34

비용추계서 첨부 제외 사유서

○ 첨부 제외 관련규정
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4항제1호

제11조(비용추계서 작성대상)

① ~ ③ 생략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. 다만,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이 곤란한 경우

○ 사 유

- 본 조례의 개정 내용은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미비한 조문을 수정·보완하기 위한 것으로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4항제1호에 해당되는 선언적 규정의 내용으로 비용추계서 첨부 제외 대상임